

# 검사강화제도(ESP)관련 “정의(definition)” 개정

관련 규칙	시행 일정
선급 및 강성규칙 1편 2장 101. 용어의 정의	2021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 되는 선박

## ○ 개정 사유

1. 독립형 탱크로 구성된 Oil Tanker의 경우, 화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강화제도(ESP)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IACS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검사강화제도 정의에 화물지역 내에 일체형 탱크를 가지는 선박에만 적용한다는 내용 추가.

## ○ 개정 사항

1. 검사강화제도(ESP)와 용어의 정의 중 아래의 내용 추가  
: 해당제도는 검사강화제도 대상 선박 중 화물지역 내에 일체형탱크를 가지는 선박에만 적용되며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박소유자는 우리 선급과 협의하여 상세한 검사계획서(Survey Programme)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하여 대한민국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는 선박의 경우 1편, 2장, 1901. “대한민국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의 요건도 만족해야 함.

## ○ 영향 분석

- ✓ 안전,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또는 기여  
: 해당사항 없음.
- ✓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